

# 화환신용장의 이론과 실제

자료제공 : 외환은행 양재동지점

## I. 서언

화환 신용장 통일규칙은 1933년 ICC Brochure No.82로 처음 세상에 태어난 이래 대략 10년을 주기로 하여 개정을 거듭하여 왔으며, 1993년 5월 13일에 5차개정 통일규칙이 공표되어 199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여 왔다.

이번 5차 개정에서는 지난 10년 동안의 무역실행의 변천을 수용하고 과학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통신과 운송에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를 통일규칙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ICC는 지난 몇 년 동안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5차 개정의 경우 운송서류에 관한 규정이 거의 전면적으로 개편되었고, 그래서 비유통 해상무역운송장, 용선계약, 선하증권, 항공운송서류,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특송수령증 등이 일반적으로 수리가능한 운송서류로 통일규칙에 반영되었다.

무역거래는 많은 부분이 신용장에 의하여 이루어 지므로 신용장과 통일규칙에 대한 정확한 기본지식이 없으면 수출입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ICC의 여러 조사에 의하여 신용장이 요구한 서류가 은행에 제시된 결과 조건불일치 (inconsistency)를 이유로 수리거절된 경우가 너무 빈발하여 분쟁과 소송이 이례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 이는 신용장을 직접 취급하는 실

무자들에게 크나 큰 경종이 아닐 수 없다. 실무자들은 통일규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수출입실무를 원활히 처리하는 능력과 소양을 하루 속히 배양하여야 할 것이다.

## II. 신용장일반

### 1. 신용장의 특성

- o 독립성 : 매매계약과의 무관계
- o 추상성 : 서류에 의한 거래

### 2. DOCUMENTARY L/C(CREDIT)

- o 화(부)환 신용장
- o TRANSPORT DUCUMENTS(운송서류)
- o 화환(貨換) 어음을 보증(保證)하는 신용장

### 3. L/C-L/G(letter of guarantee)

- o 보증장 - 보증서
- o CONSIDERATION : 약인(約因) - 유가(有價) - 대가(對價) - 법률적으로 효력있는 원인 - 의무이행의 내용을 입증 하여야만 대금청구가 가능
- o something of value given or done in exchange for something of value given or done by another, in order to make a binding contract : inducement for a

contract

- Consideration이라면 대가(對價) 또는 약인(約因)으로 해석되는데, 약속자(promiser)의 특정 약속의 대가로서 수약자(受約者 : promisee)가 제공하는 행위(service)나 약속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수약자가 약속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주거나, 이로인 행위를 하거나, 약속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거나, 수약자의 불이익을 수락하는 경우 이러한 물건, 행위, 채권 및 불이익을 말한다.  
영미법에서는 요식계약(要式契約 : formal contract) 이외의 계약(simple contract)에서는 약인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신용장은 요식계약이 아닌 단순계약(simple contract)이므로 약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 4. 대금청구

- negotiation : 수표 - 어음 따위의 양도, 유통
- collection (推尋去來)

#### 5. 대금결제

- L/C - L/G - D/P : documents against payment : 신용장이 없는 국제 거래에 쓰이는 결제(決済)조건으로, 어음으로 어음에 D/P가 적혀 있으면 지급과 교환으로 운송서류를 인도(引渡) 한다. 지급인도(支給引渡).
- 외상 :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도 하환(荷換)어음만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간편한 무역거래 방식. 인수인도.

### III. 신용장의 특성과 범위

#### 1. 신용장의 독립 - 추상성

신용장이란 어음과 같이 그 자체가 하나의 지불수단(支拂手段)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신용장 그 자체가 특정한 계약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다. 신용장은 어떤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진 법이론(法理論)이라기 보다는 상인간에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하나의 상관습(商慣習)에 기본을 둔 독특한 하나의 상업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상업거래에서는 어디까지나 매매계약이 위주가 되며,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매당사자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 곧 신용장이다. 그러나 일단 신용장이 개설되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은행이 개입하게 되므로 신용장은 그 자체로서 어떤 독립성(獨立性)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 신용장의 독립성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은행이 신용장의 당사자가 되어 신용장거래의 한계 내에서 독특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용장 자체는 어떤 특정한 매매계약에 의해 생성되었다 할지라도 일단 신용장이 존재하게 되면 그 전의 모든 계약에 의해서는 하등의 구애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법률성을 갖게 된다. 신용장 당사자의 은행과 매도인 및 매입인은 신용장 거래에서 야기된 어떤 문제를 매매계약의 내용을 들어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신용장 거래는 상품거래가 아니고 서류상의 거래라는 추상성(抽象性)이 강조되고 있다. 즉 신용장에 의한 거래의 목적이 상품이 아니고 CIF계약과 같이 거래의 목적이 서류에 있다. 그러므로 신용장 거래에서는 비록 상품이 서류보다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였어도 그 상품을 검사하고 대금을 결제한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고 반드시 서류상의 인수와 결제가 끝난 후 상품을 인수할 수 있다. 즉 모든 당사자는 서류만 갖고 매매계약의 가부(可否)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독립 - 추상성의 필요성

신용장은 매매계약의 한부분으로 되어 있고 또 계

약내용의 중요 부분이 신용장에 그대로 기재되어 매매계약 거래와 신용장 거래는 연관된 거래이므로 전자(前者)가 후자(後者)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이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신용장을 발급하는 개설은행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단순히 은행의 고객인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행동할 뿐이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신용장의 관계은행도 신용장에 명시된 지시에만 따를 뿐 그 외의 계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매매당사자들만 매매계약을 알고 있지 신용장의 다른 당사자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며, 자기가 알지 못하는 내용에 의해 규제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은행은 이러한 계약관계에 대한 당사자가 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은행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알고 있고 서류상에 명문화(明文化)된 내용에 대해서만 책임질 수 있다. 또한 은행은 그 많은 거래 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므로 매매계약서를 본다 해도 전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은행은 단순히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만을 갖고 이행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다. 만일 은행의 이러한 독립·추상성(獨立·抽象性)이 없다면 관계은행들은 신용장에 의한 금융이나 어음매입을 회피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은행의 위축(萎縮)은 자연히 국제무역 거래를 위축하게 된다.

## 2) 신용장과 매매계약

매매계약은 매도자와 매입자간에 체결되나 신용장은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그리고 개설은행과 수익자간의 특정관계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양자(兩者) 즉 신용장과 매매계약은 분명히 별개의 것이며 독립된 것이다.

매매계약의 대표적인 CIF계약에서 매도자가 계약

에 명시된 서류를 제시하면 매입자는 대금지불을 하든지 아니면 지불거절을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주어야 한다. 매입자는 현물거래(現物去來)에서와 같이 상품을 검사하고 나서 대금지불을 하겠다고는 하지 못한다.

만일 제시된 서류가 위조(僞造)된 것이나 계약과 상이(相異)한 물품을 대표하는 서류라는 확증이 가면 그러한 증거를 매입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도 수익자는 계약상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 요구된 서류를 제시하면 그 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제시된 서류가 계약상품을 정확히 대표하는가를 확인하지는 못한다. 이와 관련해서 Maurice O'Meara Co. v. National Park Bank의 판례(判例)에서 선적한 신문용지(新聞用紙)의 강도(強度)를 검사해 본 후에야 지급하겠다는 은행의 주장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유명한 판결을 내렸다.

"The dependent(bank) had no right to insist that a test" of the tensile strength of the paper be made before paying the drafts. Nor did it even have a right to inspect the paper before payment, to determine whether it in fact corresponds to the description contained in the documents. The letter of credit did not so provide. All that the letter of credit provided was that documents be presented which describe the paper shipped as of a certain size, weight and tensile strength. To hold otherwise is to read into the letter of credit something which is not there and this the court ought not to do, since it would impose of such letters of credit. This primary purpose is an assurance to the seller of merchandise of prompt payment against documents.

▶ tensile strength : 항장력(抗張力).

실제로 수입된 신문용지가 계약상품이었던 아니었던 간에 은행에게는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으며, 또 이러한 결과로 신용장 거래에서의 은행의 책임이나 의무가 조금도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은행은 단지 제출된 어음과 부대서류에만 관계되고 은행의 권익(權益)은 이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 3) 독립·추상성의 효과

#### 가) 지급·인수 및 매입은행

신용장에 대해서 지급·인수 또는 매입에 주는 은행은 단순히 개설은행의 확약(確約), 즉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와 상환(相換)으로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하면 이들 은행에 대금상환을 해주겠다는 독립·추상적인 약정만 믿고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하였으므로 이들 은행은 수출업자가 매매계약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수입업자나 개설은행으로부터 항변(抗辯)을 받지 아니한다.

#### 나) 개설은행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함으로써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에 대해서는 신용장 내용에 한해서 독립·추상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대신 수약자에게는 꼭 같은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만일 수익자가 계약물품과 어긋나는 불량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 명시된 제반서류를 제시하여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에 의해 이들 은행에 항변하지 못한다. 또 은행의 금융으로 신용장이 개설되었을 경우 수입상품의 시세가 폭락하여 기대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해 준 금액이 전부 회수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기 전에 의뢰인의 신용도가 상품의 시장성(市場性 : marketability)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다) 수익자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에 의한 제일 큰 혜택을 받는 자가 바로 수출업자인 수익자이다. 일단 취소불능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익자의 동의없이 그 누구도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수입업자가 상품이나 계약내용을 들어 아무리 항변하여도 서류만 완벽하게 준비하면 개설은행의 약정으로 대금결제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수익자도 같은 이유로 계약상품과 꼭 같은 상품을 선적하고도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와 다르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매입이나 지급을 거절당할 수가 있다.

#### 라) 개설의뢰인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때문에 가장 불리한 입장에 서있는 자가 곧 수입업자인 개설 의뢰인이다. 수출업자가 계약과는 상이한 상품을 선적해도 서류만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면 개설의뢰인인 수입업자는 대금결제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신용장에 의해 수입되는 상품이 계약상품과 일치한다는 보장은 순전히 수출업자의 성실성에 좌우된다. 물론 수입된 상품과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契約違反)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국제간의 상사소송(商事訴訟)은 여러가지로 제약점(制約點)이 많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수입업자는 거래상대를 선택할 때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자기이익을 보호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 2. 신용장의 법률적 성질

### 1) 관습에 의한 법 : 상업적 특수성

신용장의 법률관계를 여러 각도에서 연구한 Davis에 의하면, "신용장이 무엇이나에 대해 잘 이해되고 있는 이상 법정(法廷)은 신용장의 개념을 구태여 규정지으려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신용장은 환어음과 같이 그 법률적 특성을 구비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법적 효과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용

장의 법률적 개념의 정립(定立)은 큰 의의를 갖지 못한다.”고 하였듯이 신용장을 어떤 특정 법률의 테두리안에 제한하기에는 꽤 어렵다. 왜냐하면 신용장이 어떤 법률에 기인해서 생성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인들의 관습에서 유래되기 때문에 상관습(商慣習)에 의해 독자적으로 생성된 조치를 특정법에 얽매어 구속받게 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상업신용장의 법률적 특성을 논한다는 것은 실무를 떠난 학구적인 토론에 불과하나 구태여 따지면 약인(約因 ; consideration)에 관한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즉 신용장은 두 가지 계약에 의해서 구속받는다. 하나는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의 계약이고, 또 하나는 개설은행과 수익자간에 계약이다. 첫 번째 계약은 사실상 두 번째 계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수익자가 두 번째 계약에 의해서 요구된 서류를 제시해야만 그것이 곧 약인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첫 번째 계약은 약인의 결여(缺如)로 인하여 결과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사실은 수익자와 개설의뢰인간의 매매계약이 수익자로 하여금 신용장에 요구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필요한 약인을 성립시킨다.

한편, 두 번째 계약을 통상적 개면의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설은행이 확약한 내용을 수익자가 꼭 이행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익자가 신용장의 제서류(諸書類)를 제시할 때까지는 이 두 당사자간에 아무런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용장은 일방통행의 계약으로 개설은행은 수익자에게 구속받으나 수익자는 은행에 대해서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는다.

신용장의 이러한 특수한 법적 관계를 정의하고 규정하기 위하여 많은 학자들이 여러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으나 어느 하나도 신용장의 특수성을 완전히 설명함에 있어서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상업적인 특성을 갖는 신용장을 법적으로 규정할 그러한 법적이론이 요구되지도 않으며 필요하지도 않다.

신용장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특수한 영역을 점하고 있다. 신용장과 같이 상인들의 실무와 관습에 의한 것을 반드시 어떤 법적 이론을 만들어 합법화(合法化)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제까지 신용장의 특수성에 대해 법적으로 크게 이의(異議)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신용장은 어디까지나 신용장 특유의 법적 특성을 향유(享有)하며, 이 특수성이 신용장의 당사자들을 구속하게 된다.

## 2) 신용장의 법적 이론

신용장을 기존(既存)하는 특수한 계약이나 지급수단으로 분류하여 해석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신용장의 법적 의의와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존하는 다른 법을 이용하는 도리밖에 없으며, 이와 같이 다른 수단을 빌려서 설명하다 보면 그들의 모순도 발견될 수 있다. 또한 신용자의 특수성을 여기에서 재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 신용장의 법적근거를 좀더 깊고 폭 넓게 연구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독특한 신용장법(信用狀法)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학자가 주장해온 신용장에 대한 학설들 중 가장 빈번히 거론되어온 것은 대략 다음과 같다.

### 가) 계약신청설(契約申請說 ; Offer and Acceptance Theory)

이것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신용장은 하나의 “Offer”이며, 이 Offer를 받은 매도자는 그 Offer에 제시된 어음과 운송서류를 은행에 제시함으로써 Offer를 수락(受諾)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설이다.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C)의 경우에는 이설이 가능할지 모르나 신용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의 경우에는 일단 신용장이 발급되면 그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는 개설은행이 일단 신용장이 발급되면 그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는 개설은행이 그 신용장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게 되므로 일반적인 개념의 "Offer"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Offer는 언제나 Offer한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데 반해서 신용장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장을 단순히 Offer로 볼 수 없다고 분석된다. 물론 Offer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 Firm Offer이면 사실상 Offer의 발급자가 유효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나 Firm Offer의 유효기간은 대개 며칠 내의 짧은 기간이므로 신용장이 수익자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그 유효기간이 끝나게 된다.

또한 Acceptance의 경우도 취소불능신용장의 경우 신용장 조건대로 제시하는 자에게 지급하겠다는 확실한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여 수익자가 그러한 조건을 "Accept"하겠다는 정식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신용장은 개설은행의 단순한 Offer에 대한 수익자의 단순한 Acceptance로 취급할 수는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 나) 계약설(契約說 : Contract Theory)

Finkelstein은 이 계약설을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 (1) Bilateral contract between the bank and the buyer for the benefit of the seller.
- (2) Bilateral contract between the bank and the buyer with a simultaneous assignment thereof to the seller.
- (3) Bilateral contract between the bank and the seller as promisee with the consideration moving from the buyer.

첫 번째의 경우에서 신용장은 수익자를 위한 개설 의뢰인과 개설은행간의 계약의 산물(產物)이란 것인데, 이러한 계약이 순전히 수익자를 위한 것이라면 개설 의뢰인 없이도 개설은행이 직접 수익자에게 약속해도 된다는 모순에 빠진다. 많은 경우에 특정계약의 수혜자(受惠者)는 자기명의(名義)로 소송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또 그렇게 허용된 경우에도 계약의 당사자인 수익자는 개설의뢰인의 사기(詐欺)나 또는 약인(約因)의 결여 등을 이유로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에 항변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개설은행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신용장의 원뜻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면 수익자는 개설의뢰인의 신용과는 하등의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설은행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둘째의 경우를 흔히 계약이전설(契約移轉說 : assignment theory)이라고 하는데, 이는 계약 자체는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간에 체결되나 이 계약의 이익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익자인 매도인에게 이양된다는 설로서, 이런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계약체결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에 한정되게 되므로 신용장에 의한 수익자의 개설은행에 대한 절대적 권리에 위반된다.

세 번째의 경우를 경개설(更改說 : novation theory)이라고 하여 계약에서 개설의뢰인은 제외되고 개설은행과 수익자간의 계약을 변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설의 난점은 개설의뢰인이 부도를 낸다든지, 상환(償還)약속을 부정하든지, 사기(詐欺)로 신용장을 개설하였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 경개(更改)란 일정한 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목적의 변경, 채권자의 교대-채무자의 교대의 세가지가 있다. 그러나 계약을 성사(成事)시키고 중개역할을 한 매개체(link)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든지 계약의 구속을 받지 않게 되면 남은 기타 당사자가 더욱 곤경에 빠지게 된

다. 다시 말해서 개설은 행이나 수익자가 다같이 개설의뢰인이 계약의 당사자에게 송두리째 빠져 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다) 보증설(保證設 : Guarantee theory)

이것은 개설은행이 매수인의 상품대금 지급을 매도인에게 보증하는 계약이란 설인데, 이렇게 되면 신용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즉 은행이 매도인에게 직접 하게 되는, 확약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신용장의 효용이 바로 은행의 이러한 확약인데, 이것을 이차적(二次的)인 보증으로 격하(格下)시켜 버리면 신용장의 독특한 빛을 전부 잃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 Finkelstein은 은행의 의무가 단순한 보증이 아닌 절대적이고 독립된 의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하였다.

“A letter of credit is not a promise to pay if the buyer does not pay, a promise made collaterally to the buyer's obligation, as further security to the seller of the goods. The bank is neither a guarantor nor a surety, even though normally, the buyer is not discharged by the issuance of a letter of credit but continues bound to the seller under the sales contract.”

라) 금반언설(禁反言設 : Estoppel or Trustee Theory)

금반언(禁反言)이라는 다소 생소한 표현은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어느 특정인이 자기의 말이나 행위로써 고위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어느 특정의 사실상태를 믿도록 하여 놓고, 추후에 그전의 사실을 번복(顛覆)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일단 행한 표시나 행위에 대하여 그와 반대되는 주장을 법률상으로 못한다는 영미법(英美法)상의 원칙이다. 따라서 신용장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신용장 금

액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고서 신용장을 개설한 후 나중에 수익자에게 지급할 자금이 없다고 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설이다. 그러나 신용장이란 특정 조건을 구비한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지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의 자금을 신탁(信託 : trust)받고 있다는 상태를 표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Finkelstein에 의하면 신용장은 약속을 증명하는 외에 다음과 같은 상태를 포괄한다.

- ① 개설은행은 신용장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개설의뢰인으로부터 받거나,
- ②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신용장에 의해 발급된 어음이 만기(滿期)가 되기 전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 예치(預置)하겠다는 약속을 받거나,
- ③ 개설은행이 만족할 만한 모든 약인(約因)을 개설의뢰인이 제공하였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개설은행의 신용장을 개설하기 전에 상태(REPRESENTATION)를 나타내는 것이고 신용장은 이러한 상태에 근거를 두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신용장 개설 당시의 이러한 상태를 방지하여 대금지불을 요구할 수는 없다.

Morgan v. Lariviere의 경우는 1985년에 있었던 사례(Case)로 영국의 무기공급업자가 프랑스 정부의 요청으로 £40,000에 해당하는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비록 프랑스 정부가 계약을 취소하였으나, 은행은 프랑스 정부가 은행에 기탁한 자금의 잔여분에 대해서 무기공급자인 수익자에 대금을 지급하라고 한 소송이었다. 재판부는 은행이 고객의 자금을 특정 목적으로 기탁받고 있는 것과 신용장의 확약문헌과는 하등의 연관성이 없다고 하고, 다음과 같이 판시(判示)하였다.

“What is there in this letter which

constituted an equitable assignment, or what is there in it which impresses with a trust any particular sum of money? I can find no expression in the letter which could authorize such a conclusion - - - - - I read this letter as being nothing more than this : a statement by bankers to a tradesman who supplies goods to a customer of the bankers that they, the bankers, on behalf of thier customers will act as paymasters to the tradesman up to a certain amount of money; but that, in order to call upon them to act as paymasters, he, the tradesman, must bring with him certain certificates showing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to their customer. In a transaction of that kind there is nothing of an equitable assignmemt, there is nothing of trust."

마) 대리인설(代理人設 ; Seller's Agent Theory)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믿을 수 없어 신뢰 할 수 있는 은행으로 하여금 매수인을 대신해서 지불약속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지불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매수인의 의무이며, 이것은 매도인을 위해서 취해지는 매수인의 행위이므로 이러한 학설이 나오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매도인의 요청으로 매도인을 수혜자(受惠者)로 하는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하는 매수인의 행위는 매도인의 대리인적(代理人的) 역할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부수적인 계약으로 매매상품을 대표하는 운송서류를 약인으로 하여 신용장 금액을 매도자에게 지불하겠다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매수인이 개설은행과 신용장 개설계약 즉 약정을

하는 것은 매도인을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 개설은행은 매도인을 위하여 또 다른 계약을 하게 된다. 첫 번째 계약의 약인은 판매계약을 이행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 계약을 위해서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리(代理)하여 개설은행에 일정한 약인을 제공하게 된다.

어떤 학자는 개설은행의 채무에 대한 약인은 매수인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매도인이 운송서류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다고 하여 "Seller's Offer Theory"라고도 불리운다. 이에 따르면 매매계약에 따라 취소불능신용장이 개설되어 개설은행이 수익자는 개설은행에 대하여 매수인 대신 계약상품을 대표하는 물건증서(物件證書 ; document of title), 즉 운송서류를 양도할 것을 "Offer"하는 것이고 개설은행은 이를 "accept"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기 독자적으로 독립된 존재이지 반드시 한쪽이 다른 쪽의 대리인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만 볼 수는 없으며, 특히 Seller's Offer Theory를 무담보신용장(無擔保信用狀 ; Clean L/C)에 적용시키면 "offer"될 수 있는 운송서류도 없어 더욱 문제를 복잡하게 된다.

바) 상업적 특수행위설(Mercantile Specialty Theory)

지금까지 설명한 학설들은 기존(既存) 법통념(法通念)에 의거하여 억지로 짜맞추어 본 것으로 실제 상관습과는 거리도 멀고 모순도 많다. 그러므로 신용장, 특히 취소 불능신용장은 이제 상업적 특수행위의 하나로 간주되어 어음·수표 등의 유통증권(流通證券 ; negotiable instrument)과 마찬가지로 약인이 불필요한 요식계약(要式契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취소불능신용장에서 은행의 약속은 그 형식상 취소불능성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또한



상인은 이를 확신하고 있으므로 법률은 이와 같은 거래 관습상의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첫째는 약인의 문제로, 신용장의 상업적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하여 약인이 불필요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법은 약인을 요구하는 경향으로 굳어지고 있고 어음의 경우도 약인의 문제는 관계당사자간에 엄연히 존재한다. 또한 유통증권에 대해서 상법(商法)의 효과는 수표나 어음을 유통되게 하는 동시에 약인 없는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물론 이 학설에서 약인을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고 신용장에 대해서도 유통증권과 마찬가지로 약인을 광의로 완화해서 해석하자는 것이다. 신용장과 유통증권을 비교하면 개설은행과 어음인수인의 입장이 너무나 흡사하다. 어음의 인수인이 이를 인수하는 경우 그는 그 어음표시금액의 지급을 약속하고 있으므로 수령인(受領人)의 권리는 그 약속에 근거한다.

신용장에서도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 약인을 제공하거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약인을 제공하면 개설은행은 은행의 약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차이점이란 어음은 어음상에 기재된 지급약속이며, 신용장은 어음 이외의 문서에 의한 지급약속이란 점이다. 만일 우리의 법이 유통증권의 정의를 좀더 확대시켜 어떤 임의(任意)의 특정조건에 의한 것만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신용장에 언급된 모든 약속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더 단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신용장은 어음이나 수표 등과 같이 형식상 통일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음으로 어음에 적용하는 원칙을 신용장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신용장의 종류는 다양하며, 또 형식도 개설은행의 수 만큼이나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전 세계적인 신용장 통일규

칙의 제정과 형식의 통일을 통해 많이 단순화되고, 이제는 신용장도 환어음이나 약속어음과 같이 정확한 정의가 내려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신용장이 통일성의 결여로 인해 특정한 상업수단으로 대우를 받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사료된다.

어음이나 수표도 상인들이 그 시대의 관습과 필요에 따라 만들었듯이 신용장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또 오늘날의 필요에 따라 하나의 특수한 상업수단으로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異議)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 IV.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

##### 1.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UCP)

##### 2. 변천사

구 분	연 도	번 호
제 정	1933년	BROCHURE NO.82
제1차 개정	1951년	BROCHURE NO.151
제2차 개정	1962년	BROCHURE NO.222
제3차 개정	1974년	PUBLICATION NO.290
제4차 개정	1983년	PUBLICATION NO.400
제5차 개정	1994년	PUBLICATION NO.500

##### 3. 경과

- 1993년 ICC(국제상업회의소):비엔나 총회에서 처음제정(불어)
- 1차 개정 :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관습 - - - 1951년 첫 번째로 개정
- 2차 개정 : 영국계 ↔ 대륙계
- 3차 개정 : 60~70년대 - container(복합운송

## 신용장정보

방식): sea, land and air(육 해 공)

- 4차 개정 : 운송기술의 발달  
통신기술의 진척  
무역서류의 간소화  
연지급/보증신용장
-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 1994년 1월 1일  
부터 시행 (발효)

### 4. 5차 개정(현행)

- CONTAINER 정착(複合運送方式)
- COMPUTER 보급 확산, 통신기술의 발달
- EDI 전자문서/자료교환 : electronic data /documents interchange
- INCOTERM 1990 : 발효 - EDI방식에 의한 서류의 효력
- EDI통신문으로 대응
- SWIFT(세계은행간 금융전산망) :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V. 5차 개정의 목적

### 1. 신용장통일규칙(UCP400)

1984년 1월 1일부터 발효 - 10여년간 사용 :  
해석-운영상 논쟁

### 2. 실제목적

- 간소화
- 은행습관과 조화
- 은행관습을 새로 수용
- 신용장의 취소불능성(irrevocability)우선
- 개설/확인은행의 의무강조
- 서류의 언급없이 조건만 규정하는 신용장 규제
- 개설의뢰인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는 모순된 관습 삭제

- 발달과정에 있는 주요관습 - 보증신용장 (stand-by L/C)과 전자식신용장분야의 관습을 수용

### 3. 개정(구체적 사유)

- 제4차 - 제6장 총 55개 조항
- 제5차 - 제6장 총 49개 조항
- 35개 조항의 변경
- ICC 기본규칙을 구체화  
- 자기규제(self-regulation)
- 신용장의 신뢰성 제고
- 수익자 : 신용장의 취소불능성 (irrevocableness)
- 은행 : 지시당사자의 책임 강화 - 직업상 재량권 범위확대
- 조항을 보완 : 보증신용장 - EDI신용장

## VI. 5차 개정 해설

### 1. 적용 : 신용장 - 관계서류

- EDI system : 무역자동화(trade automation)
- 보증신용장(stand-by L/C)

### 2. 신용장과 매매계약

- 매매계약과 무관련 - 무구속 : 독립성 - 별개의 거래(separate transactions)

### 3. 추상성 : 서류에 의한 검토 - 서류상의 거래

### 4. 신용장과 조건변경을 위한제시

- : 완전성 및 정확성(complete and precise)
- 과도한 명세삽입억제(excessive details)

### 5. 신용장의 형태 : 신용장의 기본 양태

- 취소가능 - revocable

## 신용장정보

- 취소불가능 - irrevocable
  - 명시가 없는 신용장 : 취소불능으로 간주
6. 통지은행(advising bank)의 책임
- 외견상 진정성 : to check the apparent authenticity of the credit - 상당한 주의가 필요
  - 서명확인 : 통지번호 - 진정성
  - 통지은행의 의무 추가
7. 취소가능 신용장 : 사전통고 없이 신용장 취소
- 취소(cancel)/변경(amend) : 수익자에게 사전통고함이 없이 언제라도 가능
  - 당사자의 합의 : without agreement of all parties thereto
  - applicant : 개설의뢰인 issuing bank : 개설 은행
  - beneficiary : 수익자
8. 일람출급 : at sight
- 일람 즉시 지출/지급(payable)
  - 어음이나 수표의 지불을 요구받고 지불인에게 곧(즉시, 그 날중<其日>으로) 전액 지불할 의무가 생기는 것, 요구불(要求拂)
9. 개설은행 : 원초적인 지급의무
- 신용장의 지급약속에 대한 신뢰도 제고
10. 신용장을 변경할 때의 구속력 시점
- 개설은행 : 변경을 발행한 당시부터
  - 확인은행 : 변경을 통지한 당시부터
11. 매입(negotiation) : 정의를 명확히 함
- 매입은행이 환어음이나 서류를 수리하고 그 가액(價額)을 지급하는 것
- 수표-어음 따위의 양도, 유통
12. 서류의 심사/일치성 : 신용장에 지정된 서류만을 심사
- 은행의 서류심사 및 수리여부의 결정
  - 수령일로부터 제7일 : 은행 영업일 이내에 - 기한을 구체화
  - on demand(O/D rate) : 청하는대로, 요구불(要求拂)의
  - LIBOR :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런던은행간 거래금리) - 국제 금융 거래의 기준금리
13. 하자(瑕疵) : 수리여부(권리포기)를 교섭
- 불일치(inconsistency : 상이)
  - 하인(荷印 : shipping mark)
  - 개설은행 : 서류수리 거절, - 상당한 시간(reasonable time) - 3일 이내
14. 신용장 거래는 독립추상적 : 서류의 문면에 의해서만 심사
15. TELECOMMUNICATION : 전화 (telephone) 포함
- TELETRANSMISSION-CABLE, telegram, telex
  - 전신통신 : 원격통신
16. 영업의 재개시 : upon resumption of their business
17. 불가항력(force majeure)
- 사람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힘
  - 법률 : 외부에서 생긴 사고에서 사회 통념상의 주의나 예방으로 방지할 수 없는 일

## 신용장정보

- 어의/어원 : 우세(優勢)-불어 ; superior force
  - Webster 사전 : an event of effect that cannot reasonably be anticipated or controlled-act of God, inevitable accident, vis major
  - 구체적 사유
    - 천재(Acts of God)
    - 폭동(riots)
    - 내란(civil commotions)
    - 반란(insurrections)
    -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不可抗力的) 사유
    - 동맹파업(strikes) 또는 직장폐쇄(lockouts) : wars or any other causes beyond their control or by any strikes or lockouts
  - stoppage(부분파업)-폐쇄 : 불가항력 사유가 아님
18. 서류(documents) : 하자/수리성
- 서류발행인의 등급을 정하는 불명료한 용어의 사용금지
    - first-class(最高級の : superior, excellent)
    - well-known(有名한)
    - qualified(資格있는)
    - independent(獨立한)
    - official(公的인)
  - B/L issued by first-class shipping company is required.
19. L/C에서 본 선적재 운송서류
- on-board transport document
  - 요구하지 않는 한 수령필 또는 수탁필
20. 복합운송인(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 freight forwarder(운송주선인)
  - NVOCC - non - 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21. 복합운송 체제 : multimodalism
- 해상운송 - sea : seabill
  - 항공운송 - air : airwaybill
  - 철도/도로/내수로운송 - railroad
    - ※ 화물보관증 : warrant, warehouse receipt
    - 송장·통지서 : manifest, waybill
    - 화물인환증 : consignment sheet, receipt note
    - 화물증권 : bill of parcels
    - 환적(T/S)에 관한 정의 : 수리조건을 규정
22.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 : 그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명시하지 않은 운송주선인 발행의 운송서류(FIATA)거절규정
- 운송중계업자(freight broker) : forwarder B/L
23. 운임(運賃)등
-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가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로 변경
24. 부지약관(不知約款 : unknown clause)
- said by shippers to contain(선적인에 의하면 내용물이 얼마라고 함)
  - 수리 : shippers load and count(선적인이 적재하고 견산함)
  - 내용부지(內容不知 : CONTENTS UNKNOWN) : 검수-유보문언
25. 무고장(無故障) 운송서류의 해석
- clean on bord
  - 서류에 고장이 없음 : clean document

## 신용장정보

- 화물과 포장 - 하자표시
  - 부가조항이나 단서가 없는 : foul or dirty transport documents
26. 부가금액
- 보험최저금액 : 상업송장금액의 110%(110% of invoice value)
  - 송장금액 · 지급 · 인수 매입요청금액중 보다 큰 금액의 110%
27. C. I. P. : 복합운송상의 CIF조건
- freight/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named point of destination"
28. 신용장상에 추가위험의 명시요(要)
- usual risks, customary risks와 같이 불명(不明)한 용어의 사용금지
29. 금액/상품명세
- L/C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을 수리 할 수 있으며, 지급 등은 L/C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30. 수량 및 금액(quantity and amount)
31. 편차(偏差)
- about, circa, approximately : 상하한(上下限)10% 편차허용
  - 금액 수량 단위에 한해서 : amount, quantity, unit price
  - This credit is valid for about 6 months.  
⇒ 이 경우는 무의미(無意味)한 about임.
32. more or less clause(과부족 조항)
- 5% more or 5% less - 5%상하한 과부족 허용한도
33. L/C에서 과부족을 금지하는 문헌
- up to maximum/not exceeding : 하한편차만을 허용함
34. 유효기일(expiry date)
- 자동연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류는 유효기일(expiry)내에 제시되어야 한다.
  - for one month : 가산일은 L/C개설일 - 확인일/통지일 불가
35. 제시기일(presentation)
- presentation date/to be presented(for negotiation)
  - 서류제시기간 : 운송서류의 발행일자 후 21일 보다 늦게(유효기일을 초과해서)제시불가
  - 해당되더라도 유효기일내에 제시되어야 함
  - 유효기일이 지나면 L/C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효력없음)
36. 연장된 제시기간
- 유효기일과 서류제시기간 -- 최종일의 자동적 연장
  - 은행 휴업일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다음 최초의 영업일까지 연장
  - 익일(翌日 : following day)
  - to the first following business day
  - 선적기일(shipping date) : 자동적 연장 불허
37. 영업시간외의 제시 : 수리할 의무 없음

## 신용장정보

### 38. 선적

- 기간을 표시하는 용어에 주의 : promptly, at once, as soon as possible(ASAP), immediately - 무시(없는 것으로 간주)
- 전에는 L/C개설일로부터 기산해서 30일 이내 선적-지금은 삭제됨

### 39. on or about 선적

- 제시된 기일(일자)을 중심으로 전 5일~후 5일
- 총 11일 이내에 선적하면 유효

### 40. 일자표시용어 중에서 to, until, till, from의 해석

- 기재된/언급된(mentioned)일자를 포함
- after - 언급된 일자가 포함되지 않음
- "Documents must be presented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bills of lading(B/L)" - 선화증권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서류제출 요(要)

### 41. 월을 양분

- 양단일(兩端日)을 포함
- first half(전반월:前半月) : 1 ~ 15일
- second half(후반월:後半月) : 16 ~ 말일

### 42. 월을 삼분

- 양단일을 포함
- beinning(초순/상순) : 1 ~ 10일
- middle(중순/중완:中流) : 11 ~ 20일
- end(of a month) - 하순/하한(下澣) : 21 ~ 말일

### 43. 양도(TRANSFER)

- 권리 재산 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 주는 것

- TRANSFERABLE credit

- This ticket is not transferable.  
(이 표시는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사용불가 : divisible(to divide), fractionable (to fraction, to fractionalize), assignable (to assign), transmissible(to transmit)

### 44. 대금(代金)의 양도

(assignment of proceeds)

- 현 49조

- 신용장 금액을 청구할 권리 : 양도가능 - 채권 양도

## Ⅶ. 결 론

1. 전세계의 모든 무역업자에게는 Bible - 필독의 규약

2. 은행이 크게 개제 - 은행중심

3. 수출입인과 보험자간의 관계

4. 운송인과 보험자의 간여

5. 운송의 중요성 - container/복합운송체제 (intermodalism)

6. 교역 당사자 간의 이해, 조화와 협조